



의안번호	제7호
------	-----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2. 3.

#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7호
----------	-----

제출연월일 : 2020. 2. 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인자 부담금 단가 재산정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9호~제14호)
- 나. 조문 손괴자 등의 의무,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신설(안 제3조의2, 제7조의2)
- 다.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의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가~사목)
- 라. 별표 1, 2, 3 삭제 후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논산시 소비자 정책위원회 : 원안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 (5)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20.01.06. ~ 2020.01.26.(21일)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6)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7)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를 “논산시 상수도 원  
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원인자 부담금” 을 각각 “원인  
자부담금” 으로 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단위사업비”란 해당지자체 수도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비용을 말한다.

10.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  
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2. “시설용량”이란 해당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13.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 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14. “설치비용”이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밖”을 “내외”로, “부담시키는 경우”를 “부담시키는 경우이며,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

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1항에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4조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 손실과 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맑은물과장	조진원
	상수도팀장	김상헌
	담당자	양남규 (746-6364)

[별표 1] <신 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거시설 : 30세대이상(「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2,550㎡이상(「주택법」 제2조제6호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기준)
-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 (나) 관광숙박시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3) 판매·영업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 (가) 판매시설
  - (나) 운수시설
  - (다) 위탁시설
-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
  -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 (다) 직원훈련소 시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
  -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인 시설
-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500㎡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업무시설
- (라)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종교시설
- (바) 운동시설
-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교정 및 군사시설
- (자) 묘지관련시설
- (차) 관광휴게시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1호의 신축 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신 설>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사업 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수량은 논산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3] <신 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총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sup>3</sup>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sup>3</sup>당 사업비임
  -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2.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중규모 개발사업)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제4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구 경	원인자 부담금
13mm	180,000원
20mm	480,000원
25mm	840,000원
32mm	1,770,000원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원인자 부담금</u>"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p> <p>2.~ 8.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u>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u>원인자부담금</u>----- ----- ----- ----- -----.</p> <p>2.~ 8. (현행과 같음)</p> <p>9. "<u>단위사업비</u>"란 해당지자체 <u>수도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도물 1m<sup>3</sup>당 비용을 말한다.</u></p> <p>10. "<u>총자산</u>"이란 <u>가동설비 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u></p> <p>11. "<u>순자산</u>"이란 <u>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u></p> <p>12. "<u>시설용량</u>"이란 <u>해당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u></p>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

계획량, 인근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13.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 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14. “설치비용”이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2(손괴자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붕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신 설>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도물을

부담금-----  
-----.

1. -----  
-----  
-----  
-----  
-----  
-----  
-----

-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산업

라. 공항의 건설산업

마.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 내외-----  
-----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생략)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  
-----  
-----  
-----  
-----

----- 부담시키는 경우이며,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1항에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  
며, 산정기준은 별표 1, 부과대  
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은 별표  
2, 유형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③ (생략)

④ 시장은 파손이나 붕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  
면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

2. 제4조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  
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  
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  
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  
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  
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  
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  
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  
수관경은 시장과 협의 결정하  
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  
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③ (생략)

④ -----  
-----  
-----

리에 필요한 비용 및 파손이나  
붕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원인  
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내용  
을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  
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이나 붕괴에 책  
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  
과할 수 있다.

<신 설>

-----  
-----  
-----원인자부  
담금-----  
-----.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  
-----  
-----원인자부담금-----  
-----  
-----.

제7조의2(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  
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  
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  
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  
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  
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  
상 요구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서  
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 시설물  
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  
용은 파손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맑은물과장 조진원

##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